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20408호, 2024.3.26.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의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정보시스템의 용어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통계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토교통부 통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그 소속기관 등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를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지정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말하고, “일반통계”란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를 말한다.”를 “지정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5호·6호·7호를 각각 6호·7호·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전산자료를 말한다.”를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5. “통계등록부”란 통계청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를 각각 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와 협의를 거쳐 매년 법 제5조의6에 따른 연도별 통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통계 발전 시행계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항 번호를 삭제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13조 및 현행의 제14조를 각각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으로 통합한다.

제15조(통계의 공표 및 공표방법)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책임관 및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통계작성 결과의 공표는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고,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포함한다)하는 모든 통계의 생산, 관리, 취합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를”를 “통계데이터베이스의구축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이하 “국토교통 통계누리”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시스템에“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현행의 제17조제3항으로 통합한다.

제17조의 “통계정보시스템의 운영“를 “국토교통 통계누리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에 대하여 정비 및 개선·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입력된 통계자료가 정확성, 시의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자료를“을 “관리중인 통계에 대하여 시의성, 정확성,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정사항을 국토교통 통계누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을 각각 제3항·제4항·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을 제16조제3항과 통합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확성,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등록된 자료의 통계표 형식, 데이터누락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및 지원을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정보시스템에“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수정사항을 입력할 경우 즉시 통계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간행물 발간을 위해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총괄·기획담당부서의"를 "총괄부서(정보화통계담당관)의"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통계업무의 <u>종합·조정을 위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통계의 작성·보급</u> <u>및 이용 등에 관하여</u> -----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지정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u>말하고</u> , " <u>일반통계</u> "란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를 말한다.	2. ----- ----- ----- <u>말한다.</u>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 <u>통계등록부</u> "란 통계청장이 <u>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 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u> 말한다.

5.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생략) 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통계작성부서에서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6. ----- ----- ----- -----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7. (현행과 같음) 8. ----- ----- ----- -----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6조(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등) ① (생략) ②통계책임관은 생산된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제6조(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와 협의를 거쳐 매년 법 제5조의6에 따른 연도별 통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통계 발전 시행계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 ③ (생략)	제10조(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①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 ----- ----- -----.
제11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요구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2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요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계책임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관리 평가를 요청하려면 통계기반정책 관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 반정책관리평가요청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 ----- ----- ----- -----.

1. ~ 3. (생략) ③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제12조(통계작성 등의 협의) (생략)</u> <u><신설></u>	<u>제14조(통계작성 등의 협의) (현행과 같음)</u> <u>제15조(통계의 공표 및 공표방법)</u> <u>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u> <u>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u>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u> <u>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u> <u>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u>

제13조(통계결과 제출)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결과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통계결과를
통계청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4조(통계자료 관리) ① 통계책
임관은 효율적인 통계자료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수요
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며,
적극적으로 수요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계속
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전담
자는 소관 통계자료의 관리·보관·
안전 및 제공 등을 위해 통계책
임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정
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책임관 및 통계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⑥ 통계작성 결과의 공표는 국가
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고,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
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
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포함한다)하는 모든 통계의 생산, 관리, 취합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정보의 공유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도 정보시스템에 포함하여 구축할 수 있다.

③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 및 행정자료의 운영, 유지 보수 및 지원을 총괄한다.

제17조(통계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에 대하여 정비 및 개선·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입력된 통계자료가 정확성, 시의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자료를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①-----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이하 “국토교통 통계누리”라 한다)를

-----.

②-----

-----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

<삭 제> 현행의 제17조제3항으로 통합

제17조(국토교통 통계누리 운영)

①----- 관리중인 통계에 대하여 시의성, 정확성,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정사항을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
-----.

②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수정사항을 입력할 경우 즉시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u>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u> ③각 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u>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가능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 ④ (생략) 제18조(통계간행물 발간) ① 통계책임관은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③ (생략) ④각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간행물 발간시에는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간행물자료를 통계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하여야 한다. ⑤각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해당하는 통계간행물 발간시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그 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통계책임관은 <u>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등록된 자료의 통계표 형식, 데이터누락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및 지원을 총괄한다.</u> ④----- -----<u>국토교통 통계누리에</u> -----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통계간행물 발간) ①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④ ----- ----- ----- ----- <u>통계청장 및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 ----- -----.
--	---

<신 설> 제21조(간사) ① (생 략) ②간사는 국토교통부 통계 <u>총괄·</u> <u>기획담당부서의</u> 공무원이 된다. <신 설>	⑤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간행물 발간을 위해 통계작성부서의 장 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제출 하여야 한다. 제21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총괄 부서(정보화통계담당관)의 ----. 제2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 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